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의 조례 위임 근거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143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밀원식물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의 조례 위임 근거 신설	2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2
나. 검토의견	2
1) 입법 배경	2
2) 밀원식물 구성 사항의 조례 위임에 대한 검토	5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부 제출
2. 발 의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Ⅲ. 검토의견

1.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의 조례 위임 근거 신설

개정안은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한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정부 제출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권한, 책임, 사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주민생활 및 복지 등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¹⁾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관행적으로 상세 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을 근거로 그 위임사항을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²⁾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17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62개 법령(법률 22개, 대통령령 40개) 정비과제³⁾를 발굴함.⁴⁾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하혜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3) <참고자료1> 정비대상 법률 목록

4)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 3. 18.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유형]

정비 유형	사 례
보조·지원 사업 조례 위임 확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현행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함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대	「지하수법」(환경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의 탄력적 집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현행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함 개선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없앴

자료: 법제처 보도자료(2025. 3. 18.) 재구성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밀원식물 조성 사항의 조례 위임에 대한 검토

밀원식물(蜜原植物)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의미함(법 제2조제3호).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꿀생산량 중 아까시꿀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밀원 수종은 아래와 같음.⁵⁾

[개화기별 주요 밀원 수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동백나무 진달래	버드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사과나무 아까시나무 철쭉수 쥐똥나무	산딸나무 죽제비싸리나무 매죽나무 오동나무	질레꽃 감나무 감굴	헛개나무 조록싸리 릿대추 쉬나무	밤나무 약밤나무 산초나무 붉나무	참싸리 오갈피나무

※ 농촌진흥청, 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2021. 12.)

그러나 산주들의 조림 기피(목재용 선호)로 밀원 면적이 감소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전국적 동시 개화로 채밀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⁶⁾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⁷⁾

5) 농촌진흥청, 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2021. 12.)

6)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매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옷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철쭉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①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할 것,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것, ③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⁸⁾

이에 정부에서는 국유림 밀원수 확대, 밀원수 지역특화단지 조성, 기상이변 대응 밀원수종 개발 등 사업을 추진 중임.⁹⁾

[밀원수림 조성 현황]

(단위 : ha)

연 도	계	국유림	사유림
계	2,545.3	608.0	1,937.3
2022	550.8	146.2	404.6
2023	600.0	137.3	462.7
2024	677.5	174.5	503.0
2025(계획)	717.0	150.0	567.0

※ 주: (국유림) 안정적 채밀 공급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
(사유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밀원수종을 활용한 지역특화림 조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출(2025. 4. 17.)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사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의 위임 근거만을 두고 있으므로¹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8)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참고자료2> 밀원 확충 대책(2022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10) 다만, 현재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에서 명시하는 “공유림 조성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 식물 확충,” “밀원식물 관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은 지역의 농업 및 생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수행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는 <u>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u>로 정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u>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u>로 정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u>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u>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14

참 고 자 료

참고1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법령	내용	소관부처
22개 법률 개정안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3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4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6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 가족부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 가족부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 가족부
2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등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 교통부
22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 수산부

※ 자료: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 3. 18.

1

밀원 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산림청)

- ◆ 밀원 확충 : ('20) 14.6만ha → ('26목표) 16.4만ha, ↑12.3%(18천ha)
- ◆ 채밀기간 확대 : (현재) 3~4개월 → ('26목표) 7~8개월, 약 2배 증

- (밀원확보) 국·공유림과 유휴지를 활용한 밀원수림 조성·확대
 - * 주요 밀원수면적/아카시면적 : ('20) 14.6만ha/3.6만ha → ('26목표) 16.4만ha/3.8만ha
- 목재수확·불량림 수종갱신 시 아까시나무 등 다밀화 품종 밀원식재
 - * 연간 2만ha(1,100억원) 조림시 3,000ha 밀원숲 조성 및 숲가꾸기 시(연간 7만ha) 밀원수(1,500ha수준) 존치·보육(68,000백만원/년)
 - 공·사유림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밀원수림 조성
 - * '18년부터 1,240ha 규모의 지역특화단지(12개소) 조성 추진, 2,560백만원/년
 - 이농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활용한 밀원수 조림 추진
 - * 연평균 7,835ha의 유휴농지 발생('19.국토연구원) : 500백만원/년, 연간 50ha 활용
 - 기존 국유림에 연간 150ha 이상의 밀원수 조림 지속 진행
 - * 조림실적(ha) : ('17) 159 → ('18) 158 → ('19) 167 → ('20) 156, 2,000백만원/년
- (채밀기간 확대) 기후변화, 봄철 일시 채밀의 한계보완 및 채밀기간 확대를 위해 수종별·개화시기별 맞춤형 밀원 조성
 - 연중(3월~10월) 채밀이 가능하도록 개화기별 밀원림 조성 및 관목류·초본류가 공존하는 다층형 복합 밀원숲 조성 추진
 - * (조성 1~2년, 하층) 초본류, (2~5년, 중층) 관목류, (8~10년 이후, 상층) 교목류
 - 산림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종 식재 유도 추진
 - * 헛개나무, 옻나무, 쉬나무, 찔피나무 등 채밀량이 많고 기호성 좋은 수종 중점

□ (민간참여활성) 국유림 내 양봉활동 지원 및 사유림의 소득분배 방안 마련

- (국유림) 국유림 내에서 양봉농가의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
 - 국유림 중 준보전 국유림을 활용(대부)하여 양봉농가의 채밀활동 지원
 - * 보전국유림은 국가·지자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허가 가능
- (사유림) 양봉-산림 상생방안 마련과 밀원자원 조성 등 추진
 - 산림 밀원에 대하여 산주와 양봉업자 간 소득분배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산주와 양봉업자가 상생하는 방안 마련
 - 산주가 밀원식물을 식재하고자 할 경우 조림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비용을 양봉업자가 보전하는 방안 마련
 - * 조림비 지원 : 비용의 60%(국비), 30%(지방비), 10%(자부담)

□ (연구개발) 밀원수 개발 및 자원활용 연구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단기) 밀원수 연구 전담인력 3명 확보, (장기) 전담 부서 마련
- 지역별·계절별 밀원수 생산성 향상, 도단위 적정 군락지 연구 등
 - * 시·도별 적정 시범 군락지를 지정, 밀원수림 조성 및 양봉농가 활용 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밀원수 생리·생태 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대체 밀원수 발굴 및 기존 밀원수의 꽃꿀 분비 촉진 등 연구
 - 온난화에 대응해 전국단위 적정한 밀원 분포도 등 조사·연구
- 산림청 중심의 밀원 다층화 및 적정 수종 식재 등의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립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2. 5.)